

의안번호	제712호
의결 연월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24년 10월 2일

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
번호

712

제출연월일 : 2024년 10월 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(내수면산업연구소)는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8조에 따라 도내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수산생물 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
- 해양수산부에서는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 등에 따라 (사)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각 시·도에서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실시하도록 함
- 이에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 등에 따라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대상사무 :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
- 추진근거
 -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8조(방역교육)
 -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
 -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8조(방역교육의 실시)
 -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42호 「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」
제3조(교육 위탁기관), 제5조(교육실시 등)
- 위탁기간 : 2025. 1. ~ 2025. 12..
- 위탁내용 : 도내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수산생물 방역교육 실시(연 2회*)
*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42호 「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」 제5조(교육실시 등)에 근거
- 수탁기관 : (사)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
- 수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(지정)
 - 해양수산부에서 방역교육 위탁기관 지정

○ 소요예산 : 9,000천원(국비 50%, 도비 50%)

○ 산출근거

항목	금액(천원)	산출근거	비고
합계	9,000		
강사료	1,490	- 1급강사: 200,000원(1시간)×1인×3회 - 2급강사: 150,000원(1시간)×1인×3회 - 보조강사: 110,000원(3시간)×2인×2회	
인건비	2,520	- 교육관리자, 전산입력요원, 홍보요원	방역교육 시행규정 별표3
운영비	4,100	- 교육장소 대여, 교재편찬비, 다과비, 사무· 전산용품, 우편료 등	
위탁관리비	890	- 전산관리비, 교육프로그램개발비 등	총사업비 10% 이내

3. 참고사항

가. '25년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추진계획(안) : 붙임

나. 관계법령 : 붙임

-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38조(방역교육)
-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
-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8조(방역교육의 실시)
-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-42호 「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
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」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

2025년 충청북도 수산생물 방역교육 계획(안)

□ 추진목적 및 근거

- 교육목적 : 수산생물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어업인 방역의식 고취
- 근거법령 : 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 제38조(방역교육)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및 시행규칙 제38조(방역교육의 실시),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(해수부 고시 제2021-42호)

□ 추진개요

- 교육일정 및 장소

구분	1차 교육(북부권)	2차 교육(남부권)
날짜 및 시간	2025년 4월 17일(목) (3시간, 10:00~13:00)	2025년 4월 22일(화) (3시간, 10:00~13:00)
장소	수안보상록호텔 연회장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22 (구, 온천리 292번지)	충청북도농업기술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(구, 괴정리 383)

※ 교육일자와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- 교육방법 : 민간위탁(대면교육 3시간)
- 교육대상 : 326개소(양식장 208, 낚시터 115, 집합시설 3)
- 교육예산 : 9,000천원(국비 50%, 도비 50%)

□ 세부 추진내용

- 방역교육 위탁
 - 위탁기관 :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
 - 위탁내용 : 교육홍보, 교육접수, 교육실시, 교육만족도 조사, 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·배부 등
 - 협약일정 : 2025년 1~3월 중

○ 방역교육 대상자 : 326개소(양식장 208, 낚시터 115, 집합시설 3)

수산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(방역교육의 실시)	
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	
1.	수산물 양식을 위한 신고,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
2.	수면적(水面積) 1,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
3.	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10조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
4.	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

○ 방역교육 내용

※ 협의를 통해 일부 조정 가능

교육과목	교육내용	교육시간
교육시간 합계		3
수산물 방역기초	- 수산물 생산의 공중보건 및 방역의 의의와 필요성 - 수산물전염의 이해, 수산물 사체 처리방법 등	1
수산물 질병 이해와 건강한 수산물생산	-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최신 양식기술 - 수질관리 방법, 친환경 순환여과시스템 운용 방법 등	1
수산물 질병 관리법의 이해와 방역조치	- 수산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물전염병 예방 및 대처요령 - 효과적인 소독실시 방법 및 소독제 사용법 등	1

□ 추진일정

-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(도→해양수산부) : '25. 1월
-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(해양수산부→도) : '25. 1~3월
- 민간위탁 협약 체결 : '25. 1~3월
- 민간위탁금 지급(9,000천원) : '25. 4월
- 수산물 방역교육 실시(2회) : '25. 4~5월
- 교육만족도조사 및 정산, 결과보고 : '25. 6~12월

□ 수산생물질병 관리법

제38조(방역교육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 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(이하 “방역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방역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

제19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) ④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,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「수의사법」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한다.

□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

제38조(방역교육의 실시)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“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”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신고,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
2. 수면적(水面積) 1,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
3.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10조에 따라 낙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
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물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

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수산생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
2. 수산생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수산생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

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 [해양수산부 고시 2021-42호]

제3조(교육 위탁기관) ① 방역교육은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에 따라 양식어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대한수의사회에 위탁 실시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관은 별표의 강사인력 확보 및 시설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
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
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